

[체크리스트] 일반공급 예비입주자



필요서류 확인_ 입주자모집공고일(2026.08.14.) 이후 발행분에 한함

구분	필수	추가	해당서류	발급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필수서류	○		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	본인	• 견본주택에 비치,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동의서
	○		신분증	본인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(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) ※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 거주 사실증명서
	○	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•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/ 용도: 주택공급신청(계약)용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
	○		인감도장	본인	• 인감증명서상의 인장대조 확인,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출자는 본인 서명(제3자대리인(위임인) 계약불가)
	○		주민등록표등본 (전체포함)	본인	•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“전체포함”으로 발급.
	○		주민등록표초본 (전체포함)	본인	•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과거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성명, 관계 등 “전체포함”으로 발급.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“상세”로 발급. 배우자 및 자녀,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•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(개명자는 개명 전 서류 포함)
	○		혼인관계증명서	본인	• 혼인신고일 확인(본인 및 배우자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부 공개 “상세”로 발급)
		○	복무확인서	본인	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(수도권)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-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해당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
해외근무자 (단신부임)		○	주민등록표등본 (전체포함)	배우자	•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 된 경우 제출 (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) •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“전체포함”으로 발급
	○		해외체류(단신부임) 관련 입증서류	본인	•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: 파견 및 출장명령서(직인날인) •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: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,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• 근로자가 아닌 경우 :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(①, ② 모두 반드시 제출) ※ 유학, 연수, 관광,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,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※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
	○		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	본인 및 세대원	•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※ 비자발급내역,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, 세대원 또한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(계속하여 90일)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
가점제 당첨자 (예비입주자)		○	출입국사실증명원	배우자 및 세대원	• 세대원 및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 확인 ※ 제출 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(개명한 경우,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 사실을 추가 제출 할 수 있음) ※ 기록대조일 : 생년월일~현재로 설정(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)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
	○		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	본인	• 견본주택에 비치
		○	혼인관계증명서 (상세)	본인	•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•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를 포함하여 “상세”로 발급
가점제 당첨자 (예비입주자)		○	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	피부양 직계비속	•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, “상세”로 발급
		○	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	피부양 직계존속	•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
		○	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	피부양 직계비속	•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 출산 시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‘상세’로 발급
		○	주민등록표초본 (전체포함)	피부양 직계존속	•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등분상 등재된 사실 추가 확인 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“상세”로 발급) ※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‘전체포함’으로 발급
		○	주민등록표초본 (전체포함)	피부양 직계비속	•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 부양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“상세”로 발급)
		○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피부양 직계존속	•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-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※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직계존속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
		○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피부양 직계비속	•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-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: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-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: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※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직계비속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
		○	국민건강 보험요양급여 내역	피부양 직계존속	•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(진료개시일,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) - 당첨자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(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)
		○	국민건강 보험요양급여 내역	피부양 직계비속	•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(진료개시일,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) -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(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)
		○	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 확인서	배우자	•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(1~3점)한 경우,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- (청약홈) 청약홈 > 청약자격확인 > 청약통장 > 순위확인서 발급 >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>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(청약통장 가입은행) 창구 방문 >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
		○	당첨 사실 확인서	배우자	•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(1~3점)한 경우,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- (청약홈) 청약홈 > 청약소통방 > APT당첨사실 조회
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	○		인감증명서	청약자	•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[용도: 위임용(본인 발급용)]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
	○		인감도장	청약자	•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에는 제출 생략
	○		위임장	청약자	•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접수 장소에 비치
	○		대리인 신분증, 인장	대리인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(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) ※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 거주 사실증명서 /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
부적격 통보받은 자	○		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	해당 주택	• 등기사항전부증명서, 건축물대장등본, 무허가건물확인서, 건축물철거결실신고서 등 “소형 - 저가주택등”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) •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	○		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	해당 주택	•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, 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서류 등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 일체